

Industrial AX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「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」(이하 “규정“이라 한다) 제14조 및 관련 조항에서 정한 특수대학원 장학금 중 Industrial AX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“이라 한다)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본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신입생 장학금)

본 대학원 신입생(1학기)에게는 등록금의 100%(입학금 제외)를 감면하는 신입생장학금을 지급한다.
신입생장학금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별도의 선발절차를 두지 아니한다.

대상	장학구분	등록금감면	선발기준
신입생 (1학기)	신입생장학	100% (입학금 제외)	신입생 전원

제4조(성적우수 장학금)

재학생(2~4학기)에 대하여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등록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다.

대상	장학구분	등록금감면	선발기준
재학생 (2~4학기)	성적우수A	100%	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입학인원의 상위 10% 이내인 재학생
	성적우수B	80%	직전학기 학업성적이 B0(3.0) 이상인 재학생

전항의 “입학인원“은 해당 학생이 속한 입학년도·학기의 모집단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.

제5조(선발절차)

성적우수 장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한다.

장학생 선발 심사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한다.

제6조(장학금의 지급방법)

장학금은 장학재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등록금 고지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)

본교 정규직 교직원(무기계약직 포함) 및 그 배우자·자녀가 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규정 제9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의 70%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내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직전학기의 성적이 3.00(B0) 미만인 경우(신입생 제외)
2. 이수학기가 4개 학기를 초과한 경우

3.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장학금 신청 시 재직·소득 등 수혜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, 해당 학생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·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수혜 장학금을 환수하고 향후 교내장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9조(장학의 변경)

한 번 배정된 장학은 동일 학기에 변경할 수 없다.

미등록 휴학자의 기 수혜 장학은 취소되며,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사정을 통하여 장학내용을 새롭게 결정한다.

제10조(준용)
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및 「일반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